

채권법 3

- 채권각론에서 나오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 한국민법은 제535조로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없다. 판례는 제535조 이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가 없고, 부당파기와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인정.

- 경과실 표의자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 배상책임
- 예시는 보충판례 참조

- 채권의 목적
-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로 귀결된다. 이러한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켜 강학상 급부라고 하고, 이 급부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 채권의 종류(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 종류채권은 특정한 후에는 특정물채권이 된다.

- 1. 특정물채권
- 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 제375조 ② 전항(종류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된다.

- 특정물채권의 급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 부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 보존하는 것
- 선관주의의무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특정물을 현실로 인도한 때까지**
- **제375조는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에서 과실판단기준**

- 선관주의의무의 과중 -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관주의의무의 경감 - 제401조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없다.

- 제392조와 제401조와 같이 선관주의의무가 가중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에 이행기 이후에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행지체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1)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항력에 기한 경우이거나 2)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이 이행의 지연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국한됨
- 선관주의의무의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진다.